

2024년 제1기 중소기업부 청년인턴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인턴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최종합격자 : 52명

지원코드	채용분야	선발인원	합격자 응시번호
인턴01	행정	4명	0105, 0107, 0108, 0109
인턴02	홍보	2명	0201, 0207
인턴04	기록관리	2명	0401, 0402
인턴05	행정	6명	0505, 0515, 0520, 0526, 0528, 0542
인턴06	홍보	1명	0603
인턴07	행정(단기형)	5명	0702, 0705, 0720, 0723, 0730
인턴08	행정	4명	0801, 0803, 0813, 0817
인턴10	행정	2명	1001, 1002
인턴11	외국어(영어)	1명	1102
인턴12	행정	6명	1202, 1203, 1205, 1208, 1209, 1210
인턴13	행정	2명	1302, 1307
인턴14	홍보	1명	1405
인턴15	행정	3명	1502, 1509, 1510
인턴16	행정	3명	1609, 1612, 1613
인턴17	행정(단기형)	2명	1701, 1703
인턴18	홍보(단기형)	1명	1802

지원코드	채용분야	선발인원	합격자 응시번호
인턴20	행정	1명	2002
인턴21	행정	2명	2103, 2106
인턴22	행정(단기형)	2명	2206, 2208
인턴23	홍보	1명	2311
인턴24	통계	1명	2402

2.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 제출자료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서식, 서명하여 pdf로 제출)

○ 제출방법 : 2024. 3. 21.(목)까지 e-mail 송부

* e-mail 제목은 '(청년인턴) 응시번호_성명(예: (청년인턴)0101_홍길동)'으로 기재

지원코드	접수기관	이메일	전화번호
인턴01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ayyi@korea.kr	044-204-7042
인턴02			
인턴04			
인턴05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kdryang@korea.kr	02-2110-6304
인턴06			
인턴0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qq8325@korea.kr	051-601-5107
인턴08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treessi@korea.kr	062-360-9105
인턴10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choena1992@korea.kr	042-865-6117
인턴11			
인턴12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tjrdnjs0208@korea.kr	052-210-0006
인턴13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rla695@korea.kr	033-260-1611
인턴14			
인턴15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ssha08@korea.kr	043-230-5326
인턴16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sang1980@korea.kr	041-415-0674
인턴1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easypeasy7300@korea.kr	055-268-2531
인턴18			

인턴20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newsend@korea.kr	054-470-3709
인턴21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jwlee15@korea.kr	031-201-6915
인턴22			
인턴23			
인턴24			

- 근로계약 예정일 : 2024년 3월중 * 세부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
- 결격사유 등 부적격 사유로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로 인한 합격 취소, 최종합격자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 시험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에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